

##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공고
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(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)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추가지정 범위와 지구 내 양돈농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 설치기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일  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###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공고

#### □ 목적

- 양돈농장에서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멧돼지 발생지역도 지속 확대되어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추가지정

#### □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추가지정 지역

- ①지리적 요인, ②매개체 활동, ③지형, ④수계를 통한 오염원의 이동 등 ASF 확산 요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17개 시군 선정
  - ASF 발생 9개 시군 : (강원도) 속초·영월·평창·강릉·정선·횡성·삼척, (충청북도) 제천·단양
  - 인접 8개 시군 : (경기도) 양평·여주, (강원도) 원주·동해·태백, (충청북도) 충주, (경상북도) 영주·봉화

#### □ 방역시설 설치 기한

-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은 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5 별표1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